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800180

신 청 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김정현)

피신청인: 안준면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김정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3 신덕빌딩 11층

피신청인: 안준면

수원시

분쟁 도메인이름은 “samsungcar.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넷피아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8. 3. 2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8. 4. 2.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8. 4. 5.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8. 4. 12.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8. 5. 2.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8. 4. 27.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8. 5. 3.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정찬모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8. 5. 3.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8. 5. 9.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2018. 5. 21. 신청인은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8. 5. 28. 피신청인은 추가 서류 회신을 하였다.

2018. 6. 4. 신청인은 재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행정패널 요청에 따라 2018. 6. 12. 피신청인은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사실관계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서 확장자에 불과한 “.com”을 제외한 “samsungcar”는 자신의 대표적인 출처표시로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SAMSUNG”과 “자동차”라는 의미의 영어단어인 “car”가 결합된 것으로 신청인의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이름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서비스인 자동차 수리 부분에 상표권을 가지지 못한데 비하여 자신은 분쟁의 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며 오히려 도메인이름의 역무단탈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SAMSUNG”은 신청인 그룹사의 상호상표로 신청인을 비롯한 각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나타내는 출처표시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장이다. 신청인은 ‘승용차’ 및 ‘자동차수선업’에 대해서도 “SAMSUNG”을 상표등록 하였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2).

신청인의 표장인 “SAMSUNG”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samsungcar”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SAMSUNG”이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진 동음이의어로도 사용되어온 사실, 신청인 측이 과거에 자동차 관련 산업을 포기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는 일반인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조정부는 이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보류한 채 다음 요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자신과 친척관계에 있는 안교신 등이 1990년 무렵부터 영위해온 자동차정비업체인 “삼성카인테리어”를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며 “삼성카인테리어”가 “삼성카”로 통용된다는 점, 안교신 등과 피신청인간에 친족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표장의 존재를 알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삼성카”로 널리 인식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신청인의 지적은 일면 수공이 되나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온 상황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SAMSUNG"이 포함된 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급하며, 피신청인 측이 "삼성카"로 알려진 정도가 신청인의 주지저명성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 사실이나 UDRP 제4조 (a)항 (ii)의 정당한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광범위한 주지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청인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으로 인해 신청인이 일반인의 초기오인에 따른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이로부터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바로 추론할 수는 없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증거없이 소극적인 증거만으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D. 기타

본 조정부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UDRP가 신청인에게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는 제도상 취지를 반영한 것일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역무단점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samsungcar.com> 의 이전청구를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정찬모

결정일: 2018년 6월 26일